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<p>서울서부 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조남철 전화 02-3270-4395</p>	 <p>대한법률 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구조부장 유근성 전화 02-6923-9454</p>	<p>보도자료 2024. 11. 4.(월)</p>
--	---	--

제 목 **검찰-법률구조공단, 연 1,000% 살인적 이자율로 불법수익을 챙긴 대부업자에게 반환될 뻔한 압수물 22억원 보전조치 및 피해자 지원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(팀장 공판부장 김지영)은, 대출이 절박한 서민들을 상대로 법정한도(연 20%)를 훨씬 초과하는 연 1,000%의 이자율로 약 160억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 원에 대해,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하여 압수물 반환을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하였음
 - 법원의 몰수·추징 미선고로 불법대부업자에게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전담팀을 편성, 초과이자를 지급한 피해자 1,500여 명에게 약 1달 간 압수물에 대한 보전조치 등을 안내함
 - 검찰은 피해자 1,500여 명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유선 안내하고 피해자 200여 명(피해액 합계 약 15억 원)을 직접 면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등 악순환에 빠졌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에 인계하여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을 진행토록 하였음
-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(지부장 엄욱)는 법률상담 진행 후, 피해자 41명을 대리하여 대부업자의 압수물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고, 추가로 40여 명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을 진행할 예정임
- 앞으로도 서울서부지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대부업자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I

사건 배경

▣ 불법대부업자 압수물 22억원에 대한 법원의 몰수·추징 기각

- 서울서부지검은 '22. 10.경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압수물 22억원에 대해 몰수·추징을 구하였으나, 1심은 '23. 8.경 몰수·추징 구형을 기각*하고 항소심도 '24. 9.경 검사 항소를 기각함

* (기각 취지) 압수물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고, 초과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추징도 부적절하다는 취지

※ 대부업법위반은 부패재산몰수법상 피해재산 환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

[불법대부업자 공소사실 요지]

- ▶ '19. 2.경부터 '21. 12.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약 1,280억원 대부하고, 총 2,200여명으로부터 2,200여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약 160억 원을 수취함 [대부업법위반]

- 상고심에서 몰수·추징 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에게 압수물 22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바, 불법대부업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되고 고액의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음

▣ 검찰-법률구조공단, 범죄수익박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

- '24. 7.경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초과이자 납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익소송 진행 필요성을 논의함

- 그 결과,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압수물 22억원에 대한 보전조치 등 안내하고,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는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(압수물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·부당이득반환청구)를 진행하는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

II

주요 경과

- '22. 10. 하순 대부업자 2명 주거지·사무실에서 현금 등 22억원 압수
- '22. 11. 15. 피고인들 각 기소(1명 구속, 1명 불구속)
- '23. 8. 중순 1심 선고(압수물에 대한 몰수·추징 기각) 및 검사 항소
- '24. 7. 18.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(이하 '범죄수익환수팀'),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(이하 '법률구조공단')와 간담회 개최 및 공익소송 필요성 논의
- '24. 7.~8. [범죄수익환수팀] 초과이자 납부 일부 피해자들(50여명)에게 압수물에 대한 보전조치 등 안내
- '24. 9. 3. [법률구조공단] 공익소송으로 피해자 6명 대리하여 압수물 반환청구권에 대한 최초 가압류신청·부당이득반환청구
- '24. 9. 초순 항소심 선고(추징 기각) 및 검사 상고, 범죄수익환수팀 확대 재편성 (수사관 5명 추가 배치)
- '24. 9.~10. [범죄수익환수팀] 초과이자 납부 피해자 1,500여 명에게 보전조치 등 유선안내 및 200여 명(피해액 합계 약 15억 원) 피해진술 청취 등 면담 후 법률구조공단 인계
[법률구조공단] 위 200여 명 법률상담 및 35명 대리하여 추가 가압류신청·부당이득반환청구

[범죄수익환수팀 - 법률구조공단 협업 과정]

- ▶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수사기록에서 피해자들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한 후 직원 5명이 약 1달간 피해자 1,500여 명에게 압수물 22억원에 대한 보전조치 등을 유선 안내하고, 피해자 200여 명(피해액 합계 약 15억원)을 직접 면담하여 피해 진술 청취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로 인계
- ▶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는 위 피해자 200여 명에 대한 법률상담 진행 후 그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41명을 대리하여 대부업자의 압수물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공익소송을 진행

Ⅲ

사건 의의

- 본건은 검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고인들에게 압수물 22억원이 반환되지 않도록 차단하고,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익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지원한 모범 사례임
- 검찰이 법원의 몰수·추징 기각에도 불구하고,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에게 압수물에 대한 권리행사 방안 등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모색하고, 범죄수익 박탈에 앞장섬
-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 및 기능을 적극 수행하였음

Ⅳ

향후 계획

-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40여 명 이상 추가 피해자들이 공익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, 법률상담을 받은 피해자 120여 명*은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소송 진행 예정
 - * 120여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지원요건(중위소득 125% 이하)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소송 진행
- 앞으로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확립하여 범죄의 유인 및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음 ☑